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27

수 원 지 방 법 원

제 5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6649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redacte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6. 10. 25.

판 결 선 고 2016. 11. 29.

주 문

1. 피고가 2015.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6,028,610,360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702,982,830원 부분 및 농어촌특별세 602,861,030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70,298,280원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6,028,610,360원(납부불성실가산세 702,982,830원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602,861,030원(납부불성실가산세 70,298,280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27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redacted] 주식회사(이하 '[redacted]개발'이라 한다)는 [redacted]시 [redacted]면 [redacted]리 산[redacted] 일대 1,110,024㎡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웰링턴 컨트리 클럽, 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건설할 목적으로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뒤, 2011. 1. 2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redacted]은행, 주식회사 [redacted], [redacted] 유한회사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

나. [redacted]개발은 이 사건 골프장 공사를 완료하고 2013. 9. 10.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한 신규등록을 마친 뒤, 2013. 10. 10. 및 2014. 4. 7. 피고에 대하여 위 신규등록일을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22.부터 같은 달 26.까지 [redacted]개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자는 수탁자인 원고임에도 위탁자인 [redacted]개발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redacted]개발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전액 환급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목변경 등에 소요된 총 비용 53,256,275,41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중과세율 10%를 적용하여, 2015. 1. 27. 원고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27

대하여 취득세 7,093,735,860원(신고불성실가산세 1,065,125,5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702,982,830원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602,861,030원(납부불성실가산세 70,298,280원 포함) 합계 7,696,596,89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처분 중 각 본세 부분을 '본세 부분', 각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을 '가산세 부분'이라 한다(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은 다음 항의 기재와 같은 이유로 취소되었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5. 16.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자는 이 사건 토지의 수탁자인 원고이나, [redacted]개발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판단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원고에게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것은 잘못이고,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세액을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2015. 1. 27. [redacted]개발에 대하여 [redacted]개발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당시 누락한 골프장 건물 과표누락분에 관한 취득세 등 343,489,290원(가산세 포함) 및 골프장 오수처리시설에 관한 취득세 등 31,536,87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1 내지 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27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구 지방세법(2014. 4.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7조 제4항에 대한 해석 및 실질과세의 원칙, 원고 명의의 신탁등기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쟁점 골프장 공사가 개시되어 이루어진 구체적 사실관계, 근저당권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담보신탁의 본질, 신탁에 관한 우리 세법의 규정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 [redacted]개발이 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② 현행 지방세법은 '실질적 소유권자는 위탁자'라는 전제 하에 실질과세의 원칙에 입각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수탁자의 소유권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위탁자인 [redacted]개발이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상황에서 수탁자인 원고에 대하여 또다시 취득세 납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이에 조세심판원은 원고가 취득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을 취소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취득세 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본세 부분에 관한 판단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27

정하고, 제2항은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며, 제4항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의 경우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인데(대법원 1984. 5. 15. 선고 83누696 판결 등 참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3. 1. 27.자 2000마2997 결정,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4246 판결 등 참조), 신탁법 제27조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도 원칙적으로 수탁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구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이 규정한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고, 위탁자가 그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39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원고와 [redacted]개발 사이의 부동산신탁계약이 담보신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바가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27

라. 가산세 부분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이켜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구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재산세의 납부의무자는 위탁자"로 규정하고 있었으며(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 신탁업무에 있어 사업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27

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등(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8372 판결 등 참조) 신탁법상 신탁관계에서의 납세의무자는 각 세목에 따라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구체적 타당성에 기초하여 법리가 정립되어 있는데, 신탁관계에 있어서의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하여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구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이 규정한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395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서울고등법원 2009. 12. 23. 선고 2009누14561 판결 등).

② 이에 위탁자인 [redacted]개발이 2013. 10. 10. 및 2014. 4. 7.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과세관청인 피고 역시 이를 정당한 것으로 보아 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 1. 27. [redacted]개발에 대하여 [redacted]개발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당시 누락한 골프장 건물 과표누락분 등에 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③ 전항과 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원고가 스스로 세법 규정을 자신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④ 조세심판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여 "원고가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을 취소하였다.

⑤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27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모든 유형의 가산세 면제요건을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로 하나의 조문에서 동일한 문구로 규정하고 있는바,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로부터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자 상당의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조세를 납부한 성실한 의무이행자와 사이에서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취지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면제요건을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의 면제요건과 달리 "미납 세액의 연체이자 상당 이익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여 박탈하는 것이 납세의무자들 사이의 형평에 반한다거나 가혹하다고 여겨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마. 소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 합계 773,281,110원(취득세 가산세 702,982,830원 +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70,298,280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형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27

판사 박소연

판사 문중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27

별지1

부동산 목록

권의자	번호	물건 소재지 (읍 · 리 · 번지)		지목	지적면적 (단위:㎡)
하나자산신탁	1	[redacted]시 [redacted]면 [redacted]리	531-1	전	2,653
	2	[redacted]리	536-1	답	5,633
	3	[redacted]리	536-2	답	1,451
	4	[redacted]리	572	전	747
	5	[redacted]리	573	답	664
	6	[redacted]리	574	답	8,691
	7	[redacted]리	574-1	잡	2,397
	8	[redacted]리	574-2	전	476
	9	[redacted]리	574-3	전	205
	10	[redacted]리	574-4	잡	1,107
	11	[redacted]리	575	전	562
	12	[redacted]리	576	답	863
	13	[redacted]리	577	답	1,911
	14	[redacted]리	674	전	592
	15	[redacted]리	674-1	임	347
	16	[redacted]리	675	답	2,605
	17	[redacted]리	676	답	1,250
	18	[redacted]리	677	답	1,081
	19	[redacted]리	678	답	3,121
	20	[redacted]리	679-1	답	1,309
	21	[redacted]리	679-2	답	2,089
	22	[redacted]리	679-3	답	1,359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27

	23		[redacted]리	679-4	답	340
	24		[redacted]리	679-5	답	724
	25		[redacted]리	680	답	2,466
	26		[redacted]리	681-1	답	2,526
	27		[redacted]리	681-2	답	1,769
	28		[redacted]리	682-1	답	2,043
	29		[redacted]리	682-2	답	2,473
	30		[redacted]리	682-3	답	1,861
	31		[redacted]리	682-4	답	1,712
	32		[redacted]리	682-5	답	2,083
	33		[redacted]리	682-6	답	2,155
	34		[redacted]리	683	전	654
	35		[redacted]리	684	전	423
	36		[redacted]리	685-1	전	1,022
	37		[redacted]리	685-2	전	1,689
	38		[redacted]리	685-4	전	635
	39		[redacted]리	685-5	전	645
	40		[redacted]리	687	전	2,046
	41		[redacted]리	688	전	661
	42		[redacted]리	691	전	572
	43		[redacted]리	693	전	569
	44		[redacted]리	693-1	임	476
	45		[redacted]리	695	전	645
	46		[redacted]리	697	전	4,585
	47		[redacted]리	698	천	747
	48		[redacted]리	700	천	486
	49		[redacted]리	701	구	403
	50		[redacted]리	702	구	251
	51		[redacted]리	703	천	641
	52		[redacted]리	708-1	답	3,279
	53		[redacted]리	708-2	답	1,15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27

	54		[redacted]리	708-3	답	2,764
	55		[redacted]리	708-4	답	1,336
	56		[redacted]리	709	전	998
	57		[redacted]리	709-1	답	268
	58		[redacted]리	709-2	답	327
	59		[redacted]리	709-3	답	198
	60		[redacted]리	709-4	임	549
	61		[redacted]리	710-1	답	1,349
	62		[redacted]리	712-1	전	390
	63		[redacted]리	712-3	전	737
	64		[redacted]리	712-4	전	1,947
	65		[redacted]리	712-5	답	2,377
	66		[redacted]리	713	전	416
	67		[redacted]리	714	임	321
	68		[redacted]리	715	답	744
	69		[redacted]리	716	답	506
	70		[redacted]리	717-1	답	4,344
	71		[redacted]리	717-2	답	1,931
	72		[redacted]리	718	천	397
	73		[redacted]리	719	답	1,421
	74		[redacted]리	740	답	3,365
	75		[redacted]리	741	답	433
	76		[redacted]리	743-1	전	797
	77		[redacted]리	743-3	전	2,264
	78		[redacted]리	746	답	450
	79		[redacted]리	747	답	314
	80		[redacted]리	748	답	783
	81		[redacted]리	749	답	721
	82		[redacted]리	750	임	182
	83		[redacted]리	751	임	1,038
	84		[redacted]리	752	임	31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27

	85		[redacted]리	753	전	2,145
	86		[redacted]리	754	전	797
	87		[redacted]리	754-1	전	850
	88		[redacted]리	755	임	1,292
	89		[redacted]리	756-3	답	902
	90		[redacted]리	756-4	답	334
	91		[redacted]리	764	답	317
	92		[redacted]리	765	답	304
	93		[redacted]리	765-1	답	4,793
	94		[redacted]리	765-2	전	2,526
	95		[redacted]리	877	구	4,466
	96		[redacted]리	878	구	2,893
	97		[redacted]리	878-1	구	96
	98		[redacted]리	890	구	73
	99		[redacted]리	892-1	구	620
	100		[redacted]리	894	구	271
	101		[redacted]리	895	구	420
	102		[redacted]리	896	구	258
	103		[redacted]리	897	구	436
	104		[redacted]리	산 161-2	구	541
	105		[redacted]리	산 161-4	구	495
	106		[redacted]리	산 162	구	1,091
	107		[redacted]리	산 167	구	99
	108		[redacted]리	산 25	임	5,950
	109		[redacted]리	산 29	임	24,397
	110		[redacted]리	산 30-1	임	61,152
	111		[redacted]리	산 32	임	3,669
	112		[redacted]리	산 34	임	10,340
	113		[redacted]리	산 35	임	29,157
	114		[redacted]리	산 39-1	임	61,046
	115		[redacted]리	산 39-9	임	132,793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27

	116	[redacted]리	산 39-10	임	82,612
	117	[redacted]리	산 39-11	임	259,636
	118	[redacted]리	산 39-12	임	165,223
	119	[redacted]리	산 40	임	11,455
	120	[redacted]리	산 43	임	12,298
	121	[redacted]리	산 46-1	임	39,570
	122	[redacted]리	산 62	임	56,827
	123	[redacted]리	산 70	임	19,339
		소계			1,118,305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27

별지2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8조(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27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신탁법

제27조(신탁재산의 범위)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끝.